

더 가까이, 충주

제28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2024. 10. 16. ~ 10. 22.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 검 토 보 고 서



충 주 시 의 회  
전 문 위 원 실

# 차 례

|   |                                      |    |
|---|--------------------------------------|----|
| 1 |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
| 2 |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
| 3 |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0 |
| 4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 12 |
| 5 |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 20 |
| 1 | 시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                  | 20 |
| 2 | 호암동 2통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22 |
| 3 |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 24 |
| 4 |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변경)                  | 26 |
| 5 |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시·도유립 교환                | 28 |
| 6 |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 32 |
| 7 |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34 |
| 8 |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37 |
| 9 |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 40 |

# 1 총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9월 30일 총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2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인구와 세대수가 급증하거나 주민불편 지역의 행정리·통·반을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한 인구 증가지역 행정리·통·반 증설
  - 봉방동 모아미래도 아파트(380세대) : 1개 통, 4개 반 증
  - 주덕읍 삼일파라뷰 아파트(1,849세대) : 4개 리, 23개 반 증
- 주민불편지역 반 구역조정 및 공동주택지역 ‘반’ 증설
  - 문화동 제11통 반 조정 : 5개반 → 4개반(-1반)
  - 대소원면 대소2리 반 증설 : 4개반 → 5개반(+1반)
  - 금가면 신대2리 반 증설 : 4개반 → 10개반(+6반)

##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8. 30. ~ 9. 19.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공통주택 신축에 따른 리·반증설과 세대수 변화 등 관리지역 변동으로인한 반 구역조정을 위해 제안된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23. 12. 준공된 봉방동 모아미래도(380세대)의 27통(4반)신설, 24. 8. 준공된 주덕읍 서충주 삼일파라뷰(1,849세대)의 화곡3리~6리(23개반)신설, 문화동 11통 5반 삭제, 대소원면 대소2리 5반 신설, 금가면 신대2리 5~10반 신설임.
- 모아미래도의 통당 세대수는 같은 행정동의 푸르지오1차와 단순 비교하였을 때 통당 세대수가 167세대 많고 반은 관리 여건 상 1동 1반장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 됨.
- 서충주 공동주택(아파트)의 세대수당 이장의 수는 429세대당 1명꼴이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5~6동에 1명의 이장, 아파트 1동에 1반장을 두고 있음.

| 읍면동  | 공동주택명  | 세대수 | 이통장 수 | 세대수/이통장 수 | 비 고 |
|------|--------|-----|-------|-----------|-----|
| 대소원면 | 코아루아파트 | 603 | 1     | 603       | 8반  |
| 대소원면 | 지웰아파트  | 602 | 1     | 602       | 8반  |
| 대소원면 | 오드카운티  | 534 | 1     | 534       | 8반  |

|         |         |       |    |       |     |
|---------|---------|-------|----|-------|-----|
| 중앙탑면    | 미진이지비아  | 782   | 2  | 391   | 11반 |
| 중앙탑면    | 시티자이    | 1,596 | 4  | 399   | 20반 |
| 중앙탑면    | e편한세상   | 1,455 | 4  | 364   | 19반 |
| 중앙탑면    | 신우희가로   | 741   | 2  | 371   | 10반 |
| 중앙탑면    | 코아루더테라스 | 170   | 1  | 170   | 5반  |
| 계       |         | 6,483 | 16 | 3,434 | 89반 |
| 평균(8개소) |         | 810   | 2  | 429   | 11반 |

<서충주 공동주택(아파트) 세대수 및 이통장 수>

- 서충주 공동주택과 단순 비교 하였을 때 삼일파라뷰 이장은 462세대당 1명으로 이장의 관리 세대수가 타 공동주택의 평균보다 다소 많으며 반의 경우 일반적인 사례에 따라 1동 1반장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 됨.
- 문화동의 경우 현행 3반 일부 구역이 도로 확장 등의 사유로 인해 해당 반의 가구수가 3가구에 불과하여 해당 조례 제4조에 반 설치기준(15가구 이상 80가구 이하)에 미달되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구분<br>읍면동명 | 현 행  |     |    | 조 정 (안) |     |    | 비 고            |
|------------|------|-----|----|---------|-----|----|----------------|
|            | 이통명  | 반명  | 가구 | 이통명     | 반명  | 가구 |                |
| 문화동        | 제11통 | 제1반 | 53 | 제11통    | 제1반 | 53 |                |
|            |      | 제2반 | 42 |         | 제2반 | 44 |                |
|            |      | 제3반 | 3  |         | 제3반 | 35 | 현행 4반<br>명칭 변경 |
|            |      | 제4반 | 31 |         | 제4반 | 32 | 현행 5반<br>명칭 변경 |
|            |      | 제5반 | 35 |         | 폐지  | -  |                |

- 대소원면의 경우 대소2리 1반의 가구수는 96가구로 반 설치기준을 초과하며 분반되는 썬빌리지는 국도3호선으로 분리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분반할 필요가 존재함.

| 구분<br>읍면동명 | 현 행 |    |    | 조 정 (안) |    |    | 비 고 |
|------------|-----|----|----|---------|----|----|-----|
|            | 이동명 | 반명 | 가구 | 이동명     | 반명 | 가구 |     |
| 대소원면       | 대소2 | 1  | 96 | 대소2     | 1  | 67 |     |
|            |     | 2  | 38 |         | 2  | 38 |     |
|            |     | 3  | 18 |         | 3  | 18 |     |
|            |     | 4  | 12 |         | 4  | 12 |     |
|            |     |    |    |         | 5  | 29 |     |

- 금가면의 경우 신설되는 반들이 공군제19전투비행단 내 공동주택으로 각반의 세대수가 40가구정도에 해당하며 같은 부대 내 위치한 10개의 반으로 구성된 신대3(15통)과 비교하였을 때 반 신설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구분<br>읍면동명 | 현 행          |    |    | 조 정 (안)      |     |    | 비 고 |
|------------|--------------|----|----|--------------|-----|----|-----|
|            | 이동명          | 반명 | 가구 | 이동명          | 반명  | 가구 |     |
| 금가면        | 14통<br>(신대2) | 1반 | 30 | 14통<br>(신대2) | 1반  | 30 |     |
|            |              | 2반 | 29 |              | 2반  | 29 |     |
|            |              | 3반 | 37 |              | 3반  | 37 |     |
|            |              | 4반 | 19 |              | 4반  | 19 |     |
|            |              | -  | 38 |              | 5반  | 38 | 반신설 |
|            |              | -  | 45 |              | 6반  | 45 | "   |
|            |              | -  | 44 |              | 7반  | 44 | "   |
|            |              | -  | 41 |              | 8반  | 41 | "   |
|            |              | -  | 39 |              | 9반  | 39 | "   |
|            |              | -  | 38 |              | 10반 | 38 | "   |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행정동 및 행정리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으며 현 조례 제4조제2호에서 반은 15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 공동주택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들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해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리·통·반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문화동 11통, 대소원면 대소2리, 금가면 14통은 반 설치기준과 현지실정에 맞게 반을 조정함으로써 반의 신설·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제4조(설치기준) 이·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 12. 9.>

- 2. 반은 15가구 이상 80가구 이하로 정한다. 다만, 건물구조와 마을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 2.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2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충주시청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운영 중에 있으나,
- 2025. 2. 28.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위탁시설 개요

| 시 설 명          | 위 치           | 규 모  | 정 원 | 비 고 |
|----------------|---------------|--|-----|-----|
| 충주시청<br>직장어린이집 | 충주시<br>으뜸로 21 | 연면적 665㎡<br>(보육실 5, 강당 1, 유희실 1,<br>식당 1, 원장실 1, 교사실 1, 화장실 4) | 49명 |     |

- 위탁기간 : 5년 ▷ 2025. 03. 01. ~ 2030. 02. 28.

- 사업예산 : 400백만원(년)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자의 비용부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비용의 1/2 이상을 사에서 부담

- 연차별 민간위탁금 예산편성내역

|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비 고 |
|----------------|---------|---------|---------|---------|---------|-----|
| 예산액<br>(단위:천원) | 255,839 | 394,814 | 400,000 | 400,000 | 400,000 |     |

○ 위탁내용

- 어린이집 운영 관련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 취약보육의 우선실시(시간연장 보육 등)
- 영유아 보육 및 기타 어린이집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방법: 공개경쟁에 의한 선정(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심의)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된 사안으로 25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 됨에 따라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
-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위탁기간은 5년으로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 제4조제3항에 따라 규정됨.
-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민간위탁금은 400,000천원으로 2024년도 예산안 737,566천원의 54.2%에 해당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 50%를 초과하므로 적법하게 편성됨.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영유아 보육과정은 영유아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및 인지적 발달의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관련법령]

###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위탁보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비용 부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둘 이

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그 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 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충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2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중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 조례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되는 충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
  - 충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출연기관
  - 시장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감독 의무

#### 4. 사전절차 이행

- 입법예고: 2024. 8. 27. ~ 9. 20.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완료
- 부패영향평가: 완료
-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 본 제정 조례안은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 된 것임.
- 24. 3. 5.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까지 확대됨.
- 금번 조례의 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출자·출연기관은 출자기관인 충주드림파크개발 주식회사, 출연기관인 충주문화관광재단, 충주시장학회 총 3곳임.
-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부재를 방지하고 개인정보 등 비공개정보를 다루는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관련법령]

###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4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3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202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충주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출연 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 출연 예정금액 : 21,313천원(시비 100%)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 산출근거 :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 '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77,608,132천원 × 1.2/10,000 = 21,313천원

□ 출연 계획(단년·반복사업)

(단위: 천원)

| 구 분      | 2024년  |        |       | 2025년<br>(C) | 증감<br>(D=C-A) |
|----------|--------|--------|-------|--------------|---------------|
|          | 계(A+B) | 당초(A)  | 추경(B) |              |               |
| 시비(100%) | 21,443 | 21,443 | -     | 21,313       | - 130         |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부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제18조가 신설되면서 2016 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시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우리시는 2016년 회계연도부터 동 출연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 출연금액 산출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을 출연하도록 정하고 있어, 우리시의 2025년도 당초 예산안에 편성할 출연금액은 전전년도인 2023년도 우리시 보통세 세입결산액 177,608,132천원의 0.012%인 21,313천원임.
- 본 출연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하는 법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영재원으로 출연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타당하다고 판단됨.

## [관련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5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4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을 위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변경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1 시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사유지 매입

##### 1 매입개요

- 위 치 : 충주시 호암동 595-4 외 3필지 (택견원 옆)
- 면 적 : 4필지, 1,909㎡
- 소요예산 : 750백만원 (시비)
- 매입사유
  - 도심중심지에 위치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으나, 사유지의 매입이 되지 않아 그동안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 향후 재산가치 상승 기대 및 다양한 행정목적 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신속하게 토지를 매입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함

## 2 관리계획 대상

### ○ 토지 취득(매입)

(단위 : m<sup>2</sup>, 천원)

| 재산의 표시 |        |     |       |       | 소유자      | 재산가액<br>(공시지가기준) | 회계구분 |
|--------|--------|-----|-------|-------|----------|------------------|------|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적면적  | 매입면적  |          |                  |      |
| 합 계    | 4필지    |     | 1,909 | 1,909 |          | 306,650          |      |
| 호암동    | 595-4  | 임야  | 397   | 397   | 정하용      | 57,525           | 일반회계 |
| 〃      | 595-9  | 과수원 | 813   | 813   | 신혜란 외 2명 | 128,047          | 〃    |
| 〃      | 595-10 | 과수원 | 256   | 256   | 신혜란 외 2명 | 40,320           | 〃    |
| 〃      | 595-11 | 과수원 | 443   | 443   | 이성규 외 1명 | 80,758           | 〃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매입은 시유지 집단화를 위해 호암동 595-4번지 외 3필지, 총 1,909m<sup>2</sup>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해당 토지매입의 장점으로서는 매입예정 토지 주위를 시유지가 둘러 싸고 있는 형태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3,244평의 토지 전체를 집단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 일반적으로 토지가 요구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사업 평가 시 토지확보가 1순위인 경우가 대다수로 공모사업 대응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점, 가칭 충주 청소년회관 건립 사례로 볼 때, 토지를 미리 매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음.
-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매입 후 유희부지로 남을 수 있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장점과 단점을 비교형량한 신중한 결정이 요구 됨.

## ② 호암동 2통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주거밀집지역 및 주차취약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시민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 위 치 : 충주시 호암동 132-3번지 일원 [주차면수 : 41면]

○ 매입대상 : 주차장 사업부지 [토지 5필지, 건물 1동]

○ 사업기간 : 2025년

○ 예 산 액 : 1,070백만원 (시비 100%)

### 2 관리계획 대상

#### ○ 토지 취득(매입)

(단위 : m<sup>2</sup>, 천원)

| 재산의 표시 |       |     |       |       | 소유자      | 재 산 가 액<br>(공시지가기준) | 회계구분   |
|--------|-------|-----|-------|-------|----------|---------------------|--------|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지적면적  | 매입면적  |          |                     |        |
| 합 계    | 5필지   |     | 1,235 | 1,235 |          | 486,788             |        |
| 호암동    | 132-3 | 전   | 721   | 721   | 민경옥 외 2명 | 322,719             | 도시교통사업 |
| 〃      | 132-4 | 전   | 139   | 139   | 민경옥 외 2명 | 45,050              | 〃      |
| 〃      | 132-6 | 대   | 95    | 95    | 민경옥 외 2명 | 26,153              | 〃      |
| 〃      | 131-2 | 대   | 102   | 102   | 민경옥 외 2명 | 34,037              | 〃      |
| 〃      | 131-4 | 대   | 178   | 178   | 민경옥 외 2명 | 58,829              | 〃      |

○ 건물 취득(매입)

(단위 : m<sup>2</sup>, 천원)

| 소재지 | 지번    | 구조    | 연면적  | 소유자      | 재산가액   | 회계구분   |
|-----|-------|-------|------|----------|--------|--------|
| 호암동 | 132-4 | 경량철골조 | 78.9 | 민경욱 외 2명 | 55,700 | 도시교통사업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호암동 2통에 소규모 공영주차장 41면을 조성하기 위해 호암동 132-3번지 외 4필지, 1,235m<sup>2</sup>를 매입하고자 제안된 것임.
- 해당지역은 구도심권 도시계획 미정비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며 인근의 호암리버빌 아파트, 상가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곳으로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주민수해도가 높은 지역임.
- 소규모 공영주차장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과 달리 토지보상법 상 토지강제수용 대상이 아니므로 토지주와의 협의매수가 되지 않으면 주차장 조성이 어려움.
- 해당 부지의 경우 토지주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시 부동산매매 확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③ 충주시립미술관 건립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시민 예술문화 향유 및 미술 창작체험 기회 확대
  - 새로운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미술 및 예술교류 거점으로 활용
- 위 치: 충주시 호암동 산75-9 외 11필지
- 사업기간: 2021년 ~ 2028년
- 사업규모: 부지 12,300㎡ / 연면적 4,910㎡ / 지하1층, 지상2층
- 주요시설: 전시실, 수장고, 교육다목적실, 아트샵카페, 사무실, 도서 자료실 등

| 구 분   | 주요 시설        | 면적 (㎡) |       |
|-------|--------------|--------|-------|
| 지상 2층 | 연구실          | 120    | 800   |
|       | 사무실          | 140    |       |
|       | 회의실          | 120    |       |
|       | 공용공간         | 420    |       |
| 지상 1층 | 전시실 2        | 400    | 1,530 |
|       | 전시실 3        | 200    |       |
|       | 전시실 4        | 200    |       |
|       | 교육 다목적실 2개소  | 150    |       |
|       | 교육준비실        | 50     |       |
|       | 로비, 홀 등 공용공간 | 530    |       |
| 지하 1층 | 전시실 1        | 750    | 2,580 |
|       | 수장고 1, 2     | 988    |       |
|       | 전기/기계실       | 212    |       |
|       | 북카페          | 150    |       |
|       | 도서자료실        | 60     |       |
|       | 아트숍          | 120    |       |
|       | 홀 등 공용공간     | 300    |       |
| 계     |              | 4,910  |       |

※ 야외 주차장(관람객용) 68면 / 지하 주차장 소량 조성 예정(운영 관계자 및 작품 운반용)

○ 사 업 비 : 358억

(단위 : m<sup>2</sup>, 백만원)

| 재 원 | 총사업비   | 기투자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이후 | 비 고  |
|-----|--------|-----|-------|-------|--------|----------|------|
| 합 계 | 35,788 | -   | 100   | 3,963 | 11,374 | 20,351   |      |
| 도 비 | 24,981 | -   | -     | 3,765 | 11,041 | 10,175   | 일반회계 |
| 시 비 | 10,807 | -   | 100   | 198   | 333    | 10,176   |      |

## 2 관리계획 대상

### ○ 건물 취득(신축)

(단위 : m<sup>2</sup>, 백만원)

| 구 분 | 소재지 | 지 번             | 소유자 | 구 조        | 연면적   | 사업비    | 회계구분 |
|-----|-----|-----------------|-----|------------|-------|--------|------|
| 신 축 | 호암동 | 산75-9 외<br>11필지 | 충주시 | 철근<br>콘크리트 | 4,910 | 35,788 | 일반회계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호암동 산75-9번지 외 11필지에 연면적 4,910m<sup>2</sup>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자 제안된 것임.
- 시립미술관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되며 다양한 미술작품 등 수집과 보관의 수장고 기능, 전시물 관람 감상을 제공하는 전시기능, 미술관 관련 교육 등 지역주민의 교육기능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됨.
- 2023년 충주시 사회조사 결과 여가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9.6%불과하며 불만족은 35.5%에 달하므로 시립미술관 건립은 관내 여가문화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족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 됨.

## ④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한 농촌지역의 취약한 생활서비스 개선
- 읍면지역의 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주민주도형 개발수립

#### ○ 주요 변경내역

| 구 분   | 당 초  | 변 경   |
|-------|--|---|
| 위 치   | 금가면 도촌리 121 외 3필지<br>- 토지매입 : 사유지 3필지<br>- 충주시 소유 토지: 1필지<br>※ 도로과 재산, 이관 예정 | 좌 동<br>(토지매입 변동없음)<br>*2023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br>(원안 가결)        |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4개년)  | 2022년 ~ 2026년 (5개년)   |
| 사 업 비 | 7,500백만원<br>(국비 2,800, 시비 4,700)   | 4,000백만원<br>(국비 2,800, 시비 1,200)                            |
| 사업규모  | 부지 3,527㎡<br>건축 연면적 1,400㎡   | 부지 3,527㎡<br>건축 연면적 495㎡                                    |
| 사업내용  | - 금가문화센터 및 금가 행정복지<br>센터 복합화 조성<br>- 주차장, 광장, 체육시설 조성                        | - 금가문화센터 조성<br>(다목적강당, 공유주방, 돌봄교실 등)<br>- 화합마당 (족구, 배드민턴 등) |

#### ○ 변경사유

- 금가면 행정복지센터와의 복합화는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므로  
소요 사업기간 증가됨 [50% 이상(20억원) 증액 시 농식품부 협의]
- 20년 전 준공된 건축물로 새로 도입된 BF 및 각종 에너지 관련법 준수 시

추가로 사업비 증액 예상(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추가 공사비 발생 우려)

- 향후 공사 완료 후 하자부분 발생 우려 상존

○ 사업비 현황

(단위 : m<sup>2</sup>, 천원)

| 재 원 | 총사업비      | 기투자     | 2024년   | 2025년     | 2026년     | 비 고  |
|-----|-----------|---------|---------|-----------|-----------|------|
| 합 계 | 4,000,000 | 400,000 | 571,440 | 1,386,000 | 1,642,560 | -    |
| 국 비 | 2,800,000 | 280,000 | 400,000 | 919,000   | 1,201,000 | 일반회계 |
| 시 비 | 1,200,000 | 120,000 | 171,440 | 467,000   | 441,560   |      |

## 2 | 관리계획 대상

○ 건물 취득 (신축)

(단위 : m<sup>2</sup>, 천원)

| 구 분 | 소재지        | 지 번          | 건물명(용도) | 구 조       | 연면적 | 사 업 비     | 회계구분 |
|-----|------------|--------------|---------|-----------|-----|-----------|------|
| 신 축 | 금가면<br>도촌리 | 121 외<br>3필지 | 금가문화센터  | 철<br>콘크리트 | 495 | 2,000,000 | 일반회계 |

○ 토지 취득 : 변동없음

(단위 : m<sup>2</sup>, 천원)

| 재산의 표시     |       |    |       |       | 소유자 | 재산가액<br>(토지보상액기준) | 회계구분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매입면적  |     |                   |      |
| 금가면<br>도촌리 | 121   | 대  | 657   | 657   | 신종선 | 171,148           | 일반회계 |
|            | 122   | 대  | 1,015 | 1,015 | 서우범 | 271,512           |      |
|            | 168-3 | 임  | 1,777 | 1,777 | 김영애 | 374,947           |      |

## 3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사업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제출된 것으로 주요 변경사항은 사업비(시비) 35억 감소, 건축물 연면적 905m<sup>2</sup> 감소, 금가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사업 및 주차장 조성 삭제임.

- 해당사업은 2021. 11. 제261회 임시회에서 금가면 도촌리 168-19번지 외 7필지에 4,000백만원의 예산으로 금가희망센터(공부방, 북카페, 회의실 등), 금가화합마당, 다목적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당사업에 대해 최초의결을 받았으며, 2023 .7. 제276회 임시회에서 사업부지 매입 난항과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복합화 의견을 반영하여 금가면 도촌리 121외 3필지에 7,500백만원의 예산으로 금가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가문화센터,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변경 의결을 받은 이력이 있음.
- 금가면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는 농림식품부의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사업비 증액 등으로 계속해서 추진 할 경우 사업의 공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번 안건의 사업내용이 2021년 최초 의결 당시 사업내용과 같으며 현재까지 사업이 착공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집행기관의 주민의견 협치 노력과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⑥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한 시·도유림 교환

### 1 교환개요

#### ○ 교환대상 재산

- 처분대상 토지: 신니면 송암리 산22 외 8필지 (임야, 5,325,047㎡)

- 취득대상 토지: 안림동 산45-1 외 6필지 (임야, 3,461,567㎡)

○ 교환목적

-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과 관련하여 계명산 일원 시유림과 인접한 도유림을 취득하여 향후 활용 가능성 확대
- 인접 소규모 공유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시유재산 집산화 관리 도모
- 충주시내와 인접한 계명산 일대를 시에서 관리함으로써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

**<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

- ▶ 위 치 : 충주시 종민동 계명산 정상부 일원
-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4년)
- ▶ 사업비 : 250억원(예상)
- ▶ 내 용 : 전망대, 마루길(테마임도), 스카이워크, 해먹쉼터 등 조성

○ 교환가능 여부

- 교환대상 취득·처분하려는 토지는 모두 임야이며, 기존 시유지와연접하여 시유재산 집단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토지교환으로 개별공시지가 기준(2024년)으로 교환이 가능함

○ 교환시기 : 2024. 10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

**2 | 관리계획 대상**

○ 토지 처분 (교환 / 시유립)

(단위 : m<sup>2</sup>, 천원)

| 재산의 표시         |       |    |           |           | 소유자 | 재산가액<br>(2024년<br>공시지가기준) | 회계구분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처분면적      |     |                           |      |
| 계              | 9필지   |    | 5,325,047 | 5,325,047 |     | 11,295,970                |      |
| 충주시<br>신니면 송암리 | 산22   | 임  | 885,025   | 885,025   | 충주시 | 2,079,808                 | 일반회계 |
|                | 산23   | 임  | 37,937    | 37,937    |     | 90,290                    | 〃    |
|                | 산41   | 임  | 46,810    | 46,810    |     | 111,407                   | 〃    |
|                | 산42   | 임  | 250,711   | 250,711   |     | 576,635                   | 〃    |
|                | 319-1 | 임  | 4,972     | 4,972     |     | 12,031                    | 〃    |
| 신니면 선당리        | 산11   | 임  | 2,036,540 | 2,036,540 |     | 4,398,926                 | 〃    |
| 신니면 마수리        | 산55-1 | 임  | 565,668   | 565,668   |     | 1,091,739                 | 〃    |
| 신니면 화안리        | 산59-1 | 임  | 1,471,599 | 1,471,599 |     | 2,884,334                 | 〃    |
| 신니면 원평리        | 산2    | 임  | 25,785    | 25,785    |     | 50,796                    | 〃    |

○ 토지 취득 (교환 / 도유립)

(단위 : m<sup>2</sup>, 천원)

| 재산의 표시     |         |    |           |           | 소유자  | 재산가액<br>(2024년<br>공시지가기준) | 회계구분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취득면적      |      |                           |      |
| 계          | 7필지     |    | 3,461,567 | 3,461,567 |      | 11,411,084                |      |
| 충주시<br>안림동 | 산45-1   | 임  | 1,281,807 | 1,281,807 | 충청북도 | 3,383,970                 | 일반회계 |
|            | 산45-181 | 임  | 698       | 698       |      | 13,890                    | 〃    |
|            | 산45-182 | 임  | 1,099     | 1,099     |      | 28,464                    | 〃    |
|            | 산45-183 | 임  | 771       | 771       |      | 13,569                    | 〃    |
|            | 산45-198 | 임  | 5,502     | 5,502     |      | 10,398                    | 〃    |
|            | 134-101 | 임  | 16,955    | 16,955    |      | 31,366                    | 〃    |
| 충주시 용탄동    | 산33-1   | 임  | 2,154,735 | 2,154,735 |      | 7,929,424                 | 〃    |

○ 토지 교환가액(2024년 개별공시지가 기준)

- 처분대상 토지(신니면 송암리 산22 외 8필지) : 11,295,970천원
  - 취득대상 토지(안림동 산45-1 외 6필지) : 11,411,084천원
- ⇒ 교환차액 115,114천원은 충주시에서 납부예정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본 안건은 공유재산 집단화를 위해 시유림과 도유림을 교환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처분대상 토지는 신니면 송암리 산22번지 외 8필지 5,325,047㎡이며 취득대상 토지는 안림동 산45-1번지 외 6필지 3,461,567㎡임.
- 「공유재산법」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교환을 허용하고 있으며 교환으로 취득하는 도유림을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과 시민휴식공간 제공의 행정재산으로 이용할 예정이므로 교환이 가능함.
- 또한, 다른 지자체와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로서 교환에 있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재산의 종류 제한 및 가격 제한<sup>1)</sup> 예외사항에 해당하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교환이 가능함.

1) 종류제한: 교환의 경우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토지면 토지와 교환, 건축물이면 건축물과 교환 등  
 가격제한: 교환하는 재산 중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교환을 해서는 아니됨

- 해당 교환은 「공유재산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명산 전망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환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6 2025년도 충주문화관광재단 출연 계획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202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충주문화관광재단 운영 및 사업비 출연 : 금3,606,196천원

- 충주문화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조직관리
- 재단 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업무 수행
- 지역예술인 육성 및 각종 공모사업 수행
- 시민들을 위한 복합적 문화공간 위탁운영(생활문화센터, 서충주생

활문화센터, 음악창작소, 관아골동화관, 체험관광센터, 중앙탑의상실, 중앙탑사진관, 관광안내소, 목계나루, 공예전시관 등)

○ 지역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 활동 지원, 생활문화동아리 육성, 기획공연 및 전시 추진, 읍면동 소외지역 문화향유기회 확대, 어린이 예술교육 지원 등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 구 분 | 2024년<br>예산액 | 2025년<br>요구액* | 재원별   |    |    |       |    |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계   | 3,286        | 3,606         | 3,606 |    |    | 3,606 |    |
| 인건비 | 1,270        | 1,540         | 1,540 | -  | -  | 1,540 | -  |
| 운영비 | 626          | 567           | 567   | -  | -  | 567   | -  |
| 사업비 | 1,390        | 1,499         | 1,499 | -  | -  | 1,499 | -  |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충주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2025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금은 2024년 당초 예산액 3,288백만원 대비 320백만원 증가한 3,606백만원으로 인건비·경상비 211백만원, 사업비 109백만원이 증액 됨.

- 출연금 증액의 주된 이유는 보수 117백만원, 퇴직급여 29백만원 등 인건비 176백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21백만원, 직무수행경비 7백만원 등 경상비 47백만원 증액<sup>2)</sup>, 시민의 노래 편곡 신규사업 24백만원 증액 및 기존 사업비 85백만원 증액으로 사업비 109백만원 증액임.
-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자체사업(13개), 공모사업(5개), 수탁사업(5개), 수탁기관 운영(10개소)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충주시에서 위탁 또는 지원하는 사업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추가적으로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은 출자·출연의 경우 보조금과 달리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으므로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출자·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자·출연금액은 예산안에 편성되어 예산안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것임.

## 7 수안보야구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6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기존 물건비(경상비)에 있던 평가급이 인건비로 과목경정 됨.  
2024년도 평가급(물건비) 105백만원, 2025년도 평가급(인건비) 130백만원

## 2. 제안이유

- '24. 5.에 완공된 수안보야구장을 9월부터 시범·운영중에 있으나 공공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에 의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3. 민간위탁 계획

- 위 치: 수안보면 안보리 458-4
- 규 모: 부지면적 21,282㎡, 연면적 516.22㎡
- 주요시설: 야구장 1면, 관리동, 주차장, 야간조명, 전광판
- 위탁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
- 위탁기간 : 3년 (2025. 1. 1.~ 2027. 12. 31.)
- 위탁내용
  - 수안보야구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 수안보야구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
  - 민간위탁금 관리(교부, 사용, 정산)
  -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 ○ 본 동의안은

-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수안보야구장을 정식운영하고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주시 체육시설 사용조례」 제26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시민들의 맞춤형 체육서비스와 함께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공공체육시설물을 민간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전문성과 기술을 활용하여 체육시설 이용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제공으로 민간의 전문성이 공공부문으로 확대되면서 공무원 수를 늘리지 않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력 절감 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다만, 시설물 이용에 있어 수탁자 단체회원에게 우선 이용이나 사용료 수입 증대를 위한 장기계약 등의 폐해로 일반 시민이나 동호인의 접근이 어려워진다면 공공체육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되므로 체육 시설물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수탁협약 체결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됨.

## 7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9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7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다른 시유지내 영구 시설물 축조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동의안 제출.

### 3. 사업개요

- 사업명: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
- 위 치: 충주시 금릉동 600 및 칠금동 509-91
- 규 모: 3층 체험관 신축(5,900㎡) 및 5층 교육관 리모델링(4,125㎡) 등
- 사업비: 47,797,812천원

### 4. 추진경과 및 일정

- 2024. 9.: 2024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024. 10.: 충주시의회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결
- 2025. 5.: 설계용역
- 2026. 3.: 시설 공사
- 2027. 12.: 개원 사용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충청북도교육감이 탄금공원 내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제안된 것임.
-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의 규모는 세계무술박물관 5층 리모델링, 체험관 3층 신축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25㎡임.
-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충주시에서 부담할 것은 사업비 27억원, 탄금공원 토지 8,561㎡ · 세계무술박물관 건물 4,125㎡에 대한 사용허가와 사용료 감면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sup>3)</sup> 또는 공공용재산<sup>4)</sup>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가 가능함.
- 사용료의 경우,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면제가 가능함.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4)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공용재산에 해당하여 의회 동의를 있을 경우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재산에 축조가 가능하며, 지역 내 청소년, 아동, 일반인들에게 발명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충북 발명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관련법령]

### ■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4. 20.>

###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9] 2025년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 1. 제안경위

- 본 안건은 2024년 10월 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5호로 접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2025년도 충주시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 3. 주요내용

□ (재)충주시장학회 사업비 출연 : 금150,000천원

-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 지원
-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
- 만학도 장학생 지원
- 고등 학업성취 우수자 지원(반복지원)
- 대학 성적우수자 지원(반복지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백만원)

| 구 분 | 2024년<br>예산액 | 2025년<br>요구액* | 재원별 |    |    |     |    |
|-----|--------------|---------------|-----|----|----|-----|----|
|     |              |               | 계   | 국비 | 도비 | 시군비 | 기타 |
| 계   | -            | 150           | 150 |    |    | 150 |    |
| 사업비 | -            | 150           | 150 | -  | -  | 150 | -  |

## 5. 전문위원 검토의견

### ○ 본 출연계획안은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충주시장학회의 2025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최근 3년간(2022~2024) 장학회 출연금은 없었으나 2025년도 장학회 출연금 요구액은 150백만원으로 전액 사업비이며 전년 대비 재난·사고 등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 지원에 30백만원,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에 25백만원, 고등·대학 핵심인재 양성 지원에 82백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 됨.
- 2023년도 충주시장학회의 사업수익은 이자수익 488,393천원, 기부금수익 74,000천원으로 총 562,393천원이며 사업지출은 전문대 학생(6명) 지원에 15,000천원, 대학생(93명) 지원에 279,000천원, 고등학생(50명) 지원에 50,000천원으로 총 344,000천원임<sup>5)</sup>.

5) 2023년도 충주시장학회 결산서 기준

- 신규사업 3개를 포함하여 2025년도 충주시 장학회의 총 사업비는 494,500천원으로 2023년도 장학회 이자수익으로 보았을 때 현금성 기부금이 없거나 적을 경우 인력비용 등을 충당하지 못해 신규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임.
- 2025년도 충주시 장학회 출연금 150백만원 전액이 사업비로 편성된 점과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 천재지변 등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회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 됨.

○ 25년도 충주시 장학회 사업예산(안)/총사업비 494,500천원

(단위:천원)

| 구분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예산액     | 비고   |
|-------|-----------------|----------------------|---------|------|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294,500 | 기존사업 |
|       | 대학생             | 관내 고등 졸업한 국내 대학 재학생  | 53,000  | "    |
| 출연사업  | 초중고학생           | 재난사고등으로 학업이 어려운 학생지원 | 30,000  | 신규사업 |
|       | 초중고/대학생         | 예체능 우수학생 지원          | 25,000  | "    |
|       | 대학생<br>(문해학교출신) | 만학도 대학생 지원           | 10,000  | 기존사업 |
|       | 고등학생            | 핵심인력 양성 지원           | 52,000  | 신규사업 |
|       | 대학생             | 수도권 대학 지연인재 지원       | 30,000  | "    |
| 합계    |                 |                      | 494,500 |      |

## **[관련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충주시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출연금) 시장은 충주시장학회(이하 “장학회” 라 한다)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시세)수입의 1퍼센트 이상을 출연할 수 있다.